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9,190,876	14,975,726
일반회계	465,514,148	13,965,424
특별회계	33,676,728	1,010,302
기타특별회계	33,676,728	1,010,30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029,105	270,873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08,521	21,256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68,111	23,04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84,391	5,532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633,854	169,01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376,850	131,306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62,092	37,863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1,713,804	351,41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